

CSR과 ISO26000 : 일본의 대응

Nobuyuki Demise (일본 메이지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 머리말

일본에서는 2003년을 CSR 원년으로 삼고 그 이후 CSR에 대한 관심이나 보도가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견해가 있다. 분명히 유력 경영자단체인 경제동우회(經濟同友會)의 『제15회 기업백서』에서는 기업이 신뢰구축과 지속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CSR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 일본기업, 리코나 도시바 등에서 CSR실이나 CSR위원회 등 담당부서가 설치되고 소니 등의 일부 기업에서 CSR리포트 발표가 시작됐다. 일본경제신문사나 아사히 신문사 등의 미디어에서도 CSR에 관한 랭킹을 공표하거나 표창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는 사회성을 고려한 ‘우수 회사’ 랭킹을 매겼으며, 아사히신문사는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 ‘기업시민상’을 시상하게 되었다. 또 정부에서도 2004년에 경제산업성이 「CSR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했으며, 후생노동성은 「노동에 있어서의 CSR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해 각각 2006년에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환경성은 2004년에 「CSR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해 2005년에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07년에 「환경보고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전부터 CSR에 대한 관심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경제동우회는 1956년에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자각과 실천」이라는 성명서를 내서 기업은 사회의 공적 그릇(公器)이고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부정되며, 경제·사회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영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공해문제를 계기로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으며 경영자단체뿐 아니라 일본경영학회와 같은 학술조직에서도 CSR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의해 미국사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봉사활동이나 대학에 대한 기부강좌 등의 사회공헌활동이 일본에도 전해졌으며 이런 활동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대기업의 불상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윤리 확립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상황을 거쳐 2003년 이후 CSR에 대한 관심이 일본의 기업사회 안에서 고조된 것이다.

CSR은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가 기업에 대해 어떤 기대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일본에서는 기업 및 기업가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경제발전의 주역,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경제부흥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메이지 시대 기업가인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는 도쿄증권거래소나 은행제도 정비에 공헌하는 한편, “상공업자의 실력은 국가의 지위를 높인다”, “사업이 정업(正業)이라면 공익과 사적 이익(私利)이 일치한다” 등의 말을 남기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능력이 국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에게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엿보이는데, ‘수도철학(水道哲學)’을 내세워 품질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대량으로 제조·판매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업의 발전과 일본경제의 발전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일본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일본의 대기업 중에는 ‘본업(本業) 중심의 CSR’, ‘사업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을 기치로 삼는 곳이 적지 않다.

이는 CSR을 좁은 의미에서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준수를 의미하는 법적 책임, 경제적 가치 창조를 의미하는 경제적 책임, 법률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윤리적 책임, 사회공헌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공헌책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복합적인 나눔의 개념이 영향을 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올라가 보면 “기업의 목적은 고객의 창조이다”라고 이야기한 피터 드러커, 최근에는 전략적 CSR을 제창하고 있는 마이클 포터, 전략적 사회공헌을 제창하고 있는 필립 코틀러와 같은 미국 경영학자의 생각이 폭넓게 일본의 경영자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의 경영자나 기업이 중에서는 기업활동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의식해 사회에 유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활

동 그 자체를 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CSR로 간주해, CSR을 경쟁력이나 지속가능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는 CSR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활동이 전개됐는지 보도록 하겠다.

■ CSR활동의 계기

1990년대 초부터 대기업의 불상사가 잇따라 발각되고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업윤리 확립이나 환경관리 실천과 같은 CSR활동이 시작됐다. 1991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행동헌장」을 발표하고 참가기업에 대해 기업윤리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 후 「기업행동헌장」은 기업 불상사의 발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개정되었는데, 1996년 개정시에는 행동계획(Action Plan)의 사례가 포함되고 경영진에 의한 문제해결, 원인규명, 재발방지가 기업측에 요구되었다. 그 후 일부 일본기업은 기업윤리담당 상설기관의 설치, 기업행동규범 등의 제정·준수, 윤리교육·훈련체계의 설정·실시, 내부고발의 사전호흡과 문제해결 보증, 제도의 정기적 점검과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업윤리의 제도화라 불리는 기법이다. 미국에서 1991년에 공표된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은 ‘법령준수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것’, ‘상층부가 법령준수에 대해 감독할 것’, ‘교육연수 등에서 철저히하게 주지시킬 것’, ‘모니터링이나 감사를 해 보복의 위험이 없는 보고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에 의해 문제를 제기한 기업의 양형을 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계기로 미국기업에서는 기업윤리 제도가 진전되었다. 일본에서는 기업윤리 제도화의 진전 정도에 따라 양형이 판단되는 일은 없었으나 미국의 상황이 전달됨에 따라 일본기업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9년에 당시 금융감독청이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매뉴얼을 발표한 이래로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금융감독 매뉴얼을 발표하고 법령준수체제 확립을 요구했다. 여기에서는 법령준수에 관한 기본방침 존재, 법령준수 매뉴얼 책정, 법령준수에 대한 연수 등을 금융기관에 요구한 것이다. 또한 1999년에는 레이타쿠(雷田)대학 기업윤리연구센터가 ECS 2000이라 불리는 윤리법령 준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규격을 공표했다. 이는 경영층에 의한 윤리법

령준수의 기본방침 책정, 윤리강령·실시계획 작성 등을 하는 계획단계, 담당부서 설치, 교육과 훈련,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등을 하는 실시와 운용단계, 윤리강령 등의 준수상황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 등을 하는 감사 단계, 윤리강령 등 개정, 대폭 시정, 시스템 재검토 등을 하는 경영층에 의한 재검토 단계로 형성된 PDCA사이클에 의해 윤리법령준수를 조직에 정착시킨 것이다. 이런 흐름에 떠밀려 일본기업에서 기업윤리의 제도화나 법령준수체제 정비가 진전되었다.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1991년에 「경단련 지구환경헌장」을 공표했으며, 또 경제동우회도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공표해 기업에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1996년에 환경관리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14000시리즈의 규격이 발행되자 일본기업의 대부분이 이 인증을 취득하고 현재 약 4만 개사가 그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ISO14000가 PDCA사이클로 환경을 관리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 후 「환경보고서」 혹은 「지속가능 보고서」의 형태로 환경관리 측면에서 실적을 공표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1997년부터 일본경제신문사가 「환경경영도 조사」를 실시하고 처음으로 환경 활동과 관련된 등급을 평가했다. 정부도 1995년에 환경기본법을 제정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1997년에 용기포장 재활용법을 제정해 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게 됐다.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는 건설 재활용법, 가전 리사이클법, 그린 구입법, 식품 재활용법이 잇따라 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린 조달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활용품 등의 조달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리콜 등은 환경경영을 기치로 걸고 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양립을 도모한다. 제품의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하고 제품의 제조·판매·이용·폐기까지의 흐름을 생각해 환경부하가 적은 조달, 제조방법, 설계를 도입하고 폐기물 배출 제로(Zero Emission) 공장에서 사업소별로 ISO14001인증을 받고 환경보고서나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거래처를 포함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전체에 환경관리를 요구하게 되며 중소기업의 기업에까지도 ISO14001 인증이 확대되었다. 환경보고서 작성 시에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환경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 보고의 가이드라인이 많은 기업에서 참조된다.

또한 1999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에서 당시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를 공표하자 2001년에 기코망(일본의

간장제조업체)이 참여한 이래로 130여 기업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UNGC의 목적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사업활동에 ‘인권’, ‘노동기준’, ‘환경’, ‘부패방지’로 형성된 10개의 원칙을 포함시킬 것, 유엔의 목표를 지지하는 행동에 대해 촉매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UNGC는 글자 그대로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는 원칙으로 정해지거나 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환경문제가 그렇듯이 선진국에서도 기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국제기관과 더불어 지역의 참가조직이 로컬 네트워크를 형성해 UNGC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UNGC의 로컬 네트워크로 GC재팬 네트워크가 UNGC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2008년에는 UNGC에 대한 참여기업의 경영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개편되었다.

■ 최근의 CSR 전개

최근에는 기업윤리, 지구환경 문제, 개도국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은 적극적으로 CSR에 임하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지속적으로 「기업행동헌장」을 개정하고 2002년 개정에서는 국내외의 법률·국제규칙 및 그 정신을 준수하는 것, 소비자나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 기업윤리 철저화를 참여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4년 개정 시에 지속가능성, 인권존중,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에서의 적절한 거래가 명기되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윤리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기업은 2003년의 50.4%에서 2008년 조사에서는 83.3%로 늘었다. 또한 ‘기업윤리·기업행동지침을 책정한다’라고 답한 기업은 79.1%에서 97.8%로, ‘관리직 연수시에 다룬다’라고 답한 기업은 65.4%에서 91.9%로, ‘상담창구를 설치했다’라고 답한 기업은 51.2%에서 96.6%로 각각 증가했다.

경제동우회는 2007년에 「CSR 이노베이션 사업활동을 통한 CSR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조-일본기업의 우수사례 2007」을 발표해, CSR을 통해 사업활동도 개혁하고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를 발전·성장시킨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가치창조형 CSR에 의한 사회변혁-사회로부터의 신뢰와 사회적 과제에 부응하는 CSR로-」를 공표하고 CSR개념을 가치창조와 연결시키도록

개혁할 것을 제창한다. 경제동우회는 CSR을 통해 기업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대한 감수성을 연마해 사회적 과제와 자사의 사업활동의 관련성을 발견함으로써 신뢰 회복과 가치창조를 추구하도록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에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기업 등 조직에 공익을 해치는 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2006년에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해 주식 공개를 한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감사와 감사내용 공표를 요구했으며, 내부통제의 기동으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법령준수, 리스크 매니지먼트, CSR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정부가 2005년에 온실효과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팁 마이너스6%」라는 국민적 운동을 전개했다. 많은 기업이 이에 참여했고 ‘냉방온도는 28℃, 난방온도는 20℃를 수칙목표로 한다’, ‘절수·절전’, ‘친환경제품 사용’, ‘과잉포장 방지’ 등을 실천하게 됐다. 이 운동을 통해 2009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을 표명했으며, 이에 입각해 「Challenge25 캠페인」을 전개해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 이처럼 최근에도 정부에 의해 기업윤리나 CSR에 대한 활동이 촉구되고 있다.

이온 그룹이나 소니와 같이 ‘CSR조달’을 기치로 내걸고 협력사로부터 자재를 조달하는 거래 행위에 있어서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고 조달방침에 입각해 이해관계자로서의 협력사와 건전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유지하며 협력사의 제조공정에서 인권·노동·환경 등의 측면에서 CSR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니는 2005년에 ① 법령준수, ② 노동, ③ 안전위생, ④환경보전, ⑤ 관리시스템, ⑥ 윤리적 경영으로 구성되는 「소니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행동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중동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지원하거나 그라민 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유니클로와 같은 일본기업도 있으며, 일부 일본기업은 국제적 CSR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CSR활동은 그린 조달과 같은 정부나 거래처의 이해관계에 의해 촉구되지만, CSR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 SRI)도 니코(日興)증권에 의해 최초의 SRI펀드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대폭적으로 증가해 공모형 SRI투자신탁의 2009년 9월 시점 잔고는 5,200억 엔이 되었다.

오늘날의 일본은 기업의 CSR을 촉구하는 시스템이 정비됐으며, 또 그 활동이 공개되어 활동을 평가하고 거래나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ISO26000에 대한 대응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02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격화 검토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NGO, 전문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참가에 의해 기업을 포함한 조직 일반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격 작성작업이 시작되었다.

기업윤리 확립이나 CSR촉진에 적극적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처음에는 CSR에 대한 정부 관여나 그 규격에 대해 일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ISO에 의한 CSR관련 규격화에 대해서도 반대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국제정세를 고려해 규격 작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참여기업이나 경영자의 생각을 규격에 반영시키기 위해 규격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여기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참여기업에 대해 ISO26000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기업의 생각을 ISO26000에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2010년의 기업행동헌장 개정은 ISO26000 발행을 상정해 실시했으며, 기관지인 「일본경단련 타임스」에서도 ISO26000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ISO26000의 작성작업에 있어서 일본의 창구는 국내외의 각종 규격 작성에 관여해 온 일본규격협회의 ISO/SR위원회가 맡았으며, 위원회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 NPO/NGO, 소비자 각 대표로 구성되었다. 국내 위원회의 총수는 44명이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이외에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나 일본소비자협회 등에서도 참여했다. 단, 일본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같은 NPO/NGO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의 영향이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작성과정에서 ISO26000은 제3자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참조규격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경영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ISO14000의 경우도 그렇지만 제3자 인증은 인증을 위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의 조직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SO26000의 사회적 책임 원칙에서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인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익 존중’, ‘법 지배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 등이 거론됐으며, 사회적 책임의 핵심 주제로 ‘조직통치’,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 관행’, ‘소비자에 관련된 과제’, ‘커뮤니티 참가와 개발’을 들었다.

이는 일본의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 소비자의 의향에 따른 것이며, UNGC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 지금까지 존재했던 CSR에 관한 원칙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좋다고 할 수 있다.

■ 맺음말

일본의 기업사회에서는 CSR,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관심이 초창기부터 존재했었다. 2003년에 'CSR붐'이라 불리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히 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본기업이 사업 활동의 일부로서 CSR활동을 추진하게 됐으며 CSR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이 소개된다. 도쿄증권거래소에서도 2006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상장기업에 요구했으며, 그 안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 존중에 관한 활동' 항목이 있어 많은 상장기업이 CSR에 관한 활동을 이 항목 안에서 언급하고 있다.

CSR이나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ISO26000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닛케이(日経)에콜로지』 등의 경제잡지에서도 이를 소개하는 등 일본의 경영계에서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업윤리 제도화나 법령준수 체제 만들기, ISO14000 발행시에도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CSR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많은 일본기업이 GRI를 참조하는 것처럼 ISO26000이 발행 되면 많은 일본기업이 이를 참조규격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도 「기업행동 헌장」을 ISO26000 발행에 맞춰 개정하고 헌장 활용을 참가기업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개별 기업에서 외국기업과의 거래를 포함해 거래를 할 때 ISO26000을 참조했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를 결정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정부가 그린조달법과 같이 정부와의 거래시에 ISO 26000 참조를 요구하면 더 많은 일본기업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KLI**